

#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## 제 1 조 (목적)

본 실천사항은 한화솔루션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“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”에서 “하도급법”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 2조 내부심의위원회 구성

1.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## 제 3조 내부심의위원회 운영

1.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2.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금액 10억원 이상의 거래와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 단, 해당기준에 부합하는 협력업체가 부족한 경우, 직전사업년도 전체 하도급거래 규모가 큰 상위 10개사 이상(최대 15개사)의 협력사를 선정하여 심의를 진행한다. 사전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)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여부
  - 2)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  - 3)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 여부
  - 4)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  - 5)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 - 6)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  - 7) 특약 조건의 부당성 여부
  - 8)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 여부
3.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 또한 내부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 또는 취소 후에 등록 또는 취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사후 심의하여야 한다.
4.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5. 회사 홈페이지에 분쟁조정신청 및 사이버 Hot Line을 설치하여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며,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을 보장하고, 내부심의위원회는 안전에 대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치한다. 신청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) 신청 대상

- ① 계약체결 및 이행 등 거래과정의 분쟁 조정
- ②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
- ③ 협력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
- ④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합의 도달이 어려운 경우의 조정 신청

2) 운영 절차

- ① 협력업체 : 조정신청
- ② 담당 팀(SCD 팀 등) :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
-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관련부서 확인/검토 및 심의
- ④ 담당 팀(SCD 팀 등) : 30 일 이내 조정 결과 통지

6. 내부심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사후 심의하여야 한다.

- 1) 일정금액 이상인 하도급 거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된 후 적법성 여부 사후검증 및 시정 조치를 한다.
- 2) 주요 사후검증 사항은 서면 미교부 여부,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, 하자보수책임의 부당 전가 여부, 기술유용행위 발생 여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한다.
- 7.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8.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회의록으로 기록하고 심의종료 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**부 칙**

이 실천사항은 업무 지침으로 효력을 가지며 202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